

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비서류

■ 구비서류 [모집공고일 2026.05.22(금) 이후 발행분] ※ 인감증명서는 “본인 발급용”, 주민등록등·초본은 “전체포함”, 가족·혼인관계증명서 “상세” 제출 확인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기준	주요확인사항
	필수	해당			
공통 서류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확인(용도:주택공급계약용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(본인 출생년도~모집공고일)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 복무기간 확인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
		○	전세피해자 확인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관련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
생애 최초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 확인
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신청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
	○		소득 증빙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모두의 소득 입증서류)
	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	• 건분주택 비치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
	○	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본인	• 신청자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확인 (전년도 포함)
	○		무주택 서약서	본인 및 세대원	• 건분주택 비치
		○	부동산 소유현황 및 공시가격 증명 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(부동산 자산 33,100만원 이하 확인)
		○	가족관계증명서	직계비속	•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신생아 자녀 기준 “상세”로 발급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,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 외 불가) 제출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		• 건분주택 비치, 임신의 경우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
대리인 추가서류		○	위임장	본인	• 건분주택 비치 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및 대조 必)
		○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확인 (용도:주택공급계약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	○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대리인 본인 확인
주택 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			해당자	•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	해당자	•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		해당자	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※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5.22)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

■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발급기준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,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※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이 있는 전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('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※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,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 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(원본 : 직인날인)	①,② 해당직장
	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	① 재직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지급명세서 ※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※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에 해당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
자영업자	일반(간이)과세자/ 면세사업자	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	①,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
	신규사업자 등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* 표준(기준)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*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/등기소 또는 홈택스
	법인대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② 전년도 재무제표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⑥ 원천징수이행명세서(또는 배당금 지급 명세서 또는 배당금 원천징수영수증)	①,②,③,⑥ 해당직장 ③ 세무서 또는 홈택스 ④ 등기소
	보험모집인/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해당년도 간이 지급명세서 ※ 수입 발생기간이 단기간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
국민기초 생활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행정복지센터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	① 전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(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) ※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,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,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*직인날인, 팩스불가) ※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,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 증명서	① 해당직장/세무서 또는 홈택스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전년도 1월 1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(견본주택에 비치) ② 사실증명서(소득이 없는 경우)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
기타 (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)		① 출산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신청서(확인서)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(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류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)	①,② 해당직장

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

※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5.22)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

■ 자산보유(부동산 소유)시 증빙서류

구분			발급기관	발급방법
건축물	주택	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(https://www.realtyprice.kr)	사이트 접속 → 공동주택공시가격 → 주소 입력 → 검색 → 출력
		단독주택	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(https://www.realtyprice.kr)	1) 사이트 접속 →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→ 주소입력 → 검색 → 출력 2) 사이트 접속 →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→ 시 · 군 · 구청 홈페이지 이동 → 검색 → 출력
	주택외	서울 소재지	서울시 이택스 (https://etax.seoul.go.kr)	사이즈 접속 → ETAX 이용안내 → 조회/발급 →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→ 주소입력 → 조회 → 상세조회 → 출력
		그 외 지역 소재지	위택스 (https://www.wetax.go.kr)	사이트 접속 → 지방세정보 → 시가표준액 조회 → 주소 입력 → 검색 → 출력
토지 (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)			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(https://www.realtyprice.kr)	1) 사이트 접속 → 개별공시지가 조회 → 시 · 군 · 구청 홈페이지 이동 → 주소입력 → 검색 → 출력 2) 사이트 접속 →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→ 주소입력 → 검색 → 출력 ※ 면적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을 알 수 있는 서류발급

※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안내문에 반영된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,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